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10
----------	-------

발의연월일 : 2026. 6. 5.

발 의 자 : 김위상 · 김선교 · 신성범  
조지연 · 우재준 · 이종욱  
김기웅 · 김재섭 · 김은혜  
박성훈 · 조배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 관리에 효과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이하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40조의2(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①</u>  <u>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이하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p> <p><u>②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